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10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106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50394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형훈

변론 종결 2022. 3. 15.

판결 선고 2022. 4.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50394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12. 10. 접수 제97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21행부터 6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F단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에 관하여 C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C은 2018. 12. 1. 강서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에 각각 20,000,000원, 5,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위 체납 사실이 2019. 4. 17.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8. 12. 10.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직전인 2018. 12. 1. C은 국세를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가 정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 4. 17.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1심판결 6면 20행의 "매우 이례적인 점" 뒤에 "③ 피고와 B,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10행의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를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4행의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직후인 2018. 12. 12. C과 B의 아들인 I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 운영하던 사업을 이어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9. 1. 30.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2. 1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 22.

민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이송하였다. 그러나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20. 1. 20.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2020. 2. 11.에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성곤

판사이홍관

판사윤동연

별지